



외국의 미등록 농약이라고 모두 위해성 농약이 아니다

농약은 “수목(樹木) 및 농·임산물(農·林產物)을 포함한 농작물을 해(害)하는 균(菌), 곤충(昆蟲),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雜草), 기타 달팽이, 이끼, 잡목(雜木)등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殺菌劑), 살충제(殺蟲劑), 제초제(除草劑), 기피제(忌避劑), 유인제(誘引劑)등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增進)하거나 억제(抑制)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라고 농약관리법에서 정의(定義)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약은 우리의 먹거리인 농산물을 재배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병·해충을 예방 또는 치료하고 잡초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농작물에 영양제를 투여하여 건전하고 고품질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제이다.

이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병에 걸렸을 때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의약을 복용한다든가 직접 주사하여 치료하기도 하고 평소에 건강을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보약을 복용하는 것과 똑 같은 이치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의약(醫藥)은 사람을 질병(疾病)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제이고 농약은 농작물, 즉 식물의 병·해충 및 잡초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제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다.

등록농약은 각국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각 나라마다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병해충 및 잡초의 방제효과 및 농약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재배 농작물의 종류, 발생되는 병해충, 잡초의 종류 및 발생정도 등 농업환경, 농약의 가격 등 여러 가지의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독일이나 스위스같이 수도가 재배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벼에 발생하는 도열병



정영호

농업과학기술원 농약안전성과장

농약은 병해충 및 잡초의 방제효과와 농약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재배 농작물의 종류, 발생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 발생정도등 농업환경과 농약의 가격등 여러가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이나 벼멸구와 같은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농약의 등록은 필요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열대작물(熱帶作物)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개발된 약제는 우리나라나 한대지방(寒帶地方)에서는 등록,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각국에서 등록, 사용되는 농약은 그 나라의 농업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농약만을 선택하여 등록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동일한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발생정도가 미미하여 방제하지 않더라도 수확량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약제를 등록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편 아무리 약효가 우수하고 안전한 농약이라 하더라도 그 약제의 가격이 경제적으로 보상될 수 없다면 농민들은 그 약제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의약품(醫藥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

어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말라리아”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않아 “말라리아”的 치료약인 “카니네”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외국으로부터 최근 한글로자들에게 “말라리아”가 발생하였으나 국내에서 치료약인 “카니네”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내에서 “말라리아”的 침염이 문제될 우려가 있으면 “카니네”를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의약이나 농약의 등록 사용은 각국의 사회적 필요성 또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농약이 국내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는 “농약을 개발한 국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규제없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에서 사용하

지 않는 농약은 모두 위해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물론 외국에서 농약의 위해성(危害性)이 우려되어 등록,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자국(自國)내에서 개발한 농약을 자기들의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위해성이 문제되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발한 농약에 대해 자기들 나라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나 적용 병해충 및 잡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농약이 적용될 수 있는 제3국에 등록하여 실용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한 농약회사가 벼 도열병에 특효약(特效藥)을 개발하였다면 벼를 재배하지 않는 스위스에는 등록하지 않고 우리나라나 일본, 태국등 동남아시아의 미곡(米穀)생산국에 등록하여 실용화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연구 기관에서 목화(木花)밭에 주로 발생하는 잡초를 방제하기 위한 제초

**외국에서 등록,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안전하고,
외국에서 미등록된 농약은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사대주의적 발상은
우리나라의 농약개발기술의 선진화를 거부하고
선진국에 기술예속을 지속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이들 연구기관에서 약효가 우수하고 잔류성이나 독성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목화 밭 제초제의 개발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용화를 위한 등록은 무의미(無意味)하므로 목화재배가 많은 미국이나 파키스탄등의 나라에 등록하여 실용화 시킬 것이다. 따라서 농약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각국의 농업여건에 따라서 농약의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한편 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국내에서 사용한다고 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소위 말하는 G7국가 또는 OECD국가와 같은 선진국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농약은 없다. 즉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1996년 3월 현재 주성분으로 총 300여종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농약을 이용한 혼합제

또는 다양한 제형의 개발로 657개 품목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농약 중 우리나라에서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농약은 한 품목도 없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약을 품목고시 할때 선진국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품목고시를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로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품목고시를 위한 약효, 약해, 잔류성 및 독성시험에 완료된 품목이라도 선진국에서 등록되는 것을 기다려 고시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잔류성, 발암성등의 위해성 문제로 품목을 폐지한 γ -BHC, daminozide 등의 농약은 선진국에서 적용작물등을 규제하여 선별적(選別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농약이 국내에서는 잔류성이나 발암성의 우려가 여론화 되어 품목을 폐지하였으나 선진국에서는 이들 농약이 가지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해성 보다 유익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하고 위해성은 적용작물이나 사용방법등을 규제함으로써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중 외국의 일부 국가에서 등록, 사용하지 않는 농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없으며, 외국에서 미등록의 이유는 그 농약의 위해성 문제 이전에 그 나라의 농업여건이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미등록된 농약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농약의 개발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외국에서 등록,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안전하고 외국에서 미등록된 농약은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사대주의적 발상은 우리나라의 농약개발기술의 선진화를 거부하고 선진국에 기술 예속(隸屬)을 지속시키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농약정보**